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토론회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

조례 제정

2020

05. 22(금) 10:00

전북 도의회 세미나실

주최 |  전라북도의회,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주관 |  전라북도의회, 사회적경제활성화 전북네트워크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 조례제정 정책토론회



2020년 5월 22일(금) 오전 10시
전북도의회 1층 세미나실

토론회 프로그램

10:00~10:20 인사말 및 소개

10:20~11:20 좌장 국주영은 (전북도의회행정자치위원장
더불어민주당전북도당사회적경제위원장)

발제 사회적금융 법.제도개선 추진의 필요성
장지연 (재)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경영기획실장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기금 조례 제안
이현민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사회적금융위원장

11:20~11:45 토론 전북사회적경제기업 부문별 협회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과
전주시 사회연대지원과
전북연구원

11:45~12:00 종합토론

11:45~12:00 폐회

공동주최 전라북도의회, (사)전북사회적경제네트워크

주 관 전라북도의회, 사회적경제활성화전북네트워크

차 례

▶▶▶ 진행일정	05
▶▶▶ 기초발제(1) 사회적금융관련 법·제도개선현황	07
▶▶▶ 기초발제(2) 전라북도사회적경제기금조례제안	21
▶▶▶ 지정토론 전북사회적경제기금조례쟁점	33
▶▶▶ 종합토론 전북사회적경제기금조례쟁점	51
▶▶▶ 참고자료 사회적금융의 대응현황과 쟁점	55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정책토론회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 조례 제정”

2020년 05월 22일(금) 오전10시~12시

전북 도의회 세미나실

진행일정

사 회: **조용희**사무국장 사회적경제활성화 전북네트워크

10:00~10:20(20')	여는시간	인사말: 한제욱 상임대표 사회적경제활성화 전북네트워크 환영사: 송병주 대표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송성환 의원 전라북도의회 의장 오평근 의원 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 나석훈 본부장 전라북도일자리경제국
10:20~10:50(30')	기초발제 (1)	좌장: 국주영 은의 원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더불어민주당전북도당 사회적경제위원장 ● 사회적금융 관련 법·제도 개선 추진 현황 장지연경영기획실장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10:50~11:20(30')	기초발제 (2)	●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기금 조례 제안 이현민 사회적금융위원장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11:20~11:25(5')	지정토론 (1)	● 기혜림 회장 전북사회적기업협의회
11:25~11:30(5')	지정토론 (2)	● 고선미 전무이사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사회서비스위원장
11:30~11:35(5')	지정토론 (3)	● 송금현 과장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과
11:35~11:40(5')	지정토론 (4)	● 황영모 박사 전북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장
11:40~12:00(20')	종합토론	● 전북 사회적경제기금 조례 쟁점

※상기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Memo

A large, empty rectangular area with rounded corners, enclosed by a thin gray border. This area is intended for writing a memo or taking notes.

기조 발제1

사회적금융 관련 법·제도 개선 추진 현황

장지연 경영기획실장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사회적금융 관련 법·제도 개선 추진현황

- 2020. 5,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1. (배경) 사회적금융 활성화 정책

□ 사회적경제 자금공급 증가 및 제도 변화

- '18.2월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인프라를 사회적경제 기업 대상으로 가동하는 방식으로 사회적금융 공급 확대
 - 사회적기업('12년), 협동조합('14년), 소비생협('19년)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통해 중소기업자 지위 획득 → 기존 금융인프라로 이들에 대한 지원 가능
- 시중은행, 벤처캐피탈 등 금융기관 차원에서 내부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사회적금융 취급 개시
 - 은행연합회,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모범규준 마련 ('18.12)
 - 중소벤처기업부-기술보증기금, 소셜벤처 판별 가이드라인 및 평가모형 마련 ('19.3)
- 금융위에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사회적기업 자금공급 관련한 개선사항을 반영해 '18.4월부터 시행하였으나 실제 현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경미함
 -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PEF 투자대상에 사회적기업 포함
 - 사회적기업은 업력제한 없이 P2P 크라우드펀딩으로 투자유치 가능¹⁾

□ 사회적금융 활성화정책 평가

- 현재의 방식은 금융에 목마른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금수요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아래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문제점 1) 주식회사가 아닌 협동조합·비영리조직에 대한 자금공급에 한계** 노출
 - 기업의 창업단계부터 규모화까지 지원하는 임팩트펀드가 연간 1천억원 이상 공급되고 있으나 제도적으로나 업무관행 상 주식회사 법인격으로 집중
 - 이는 사회적경제 영역 안에서 법인 유형에 따른 기업 간 격차를 확대시키는 의도치 않은 결과 초래 가능성
- **(문제점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전략에 영향을 미쳐 사회적가치 창출력 약화** 우려

1) 일반 기업의 경우 업력 7년 이하로 제한되어 있으나, 금융위원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이 제한을 없애는 작업 추진 중

- 주식회사에서 투자자는 기업의 성장전략과 비전설정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 발휘
→ 사회적경제기업의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할 가능성 존재
- 임팩트펀드 운용사로부터 사회적기업의 배당제한 요건 완화 요청이 나오기도 하고, 후속투자 유치 단계에서 임팩트투자자 철수가 요구되는 사례 발생
- 문제점을 보완하여 사회적금융의 공급체계를 완성시킬 수 있는 방안은,
 - (1)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전용기금의 조성과
 - (2) 기금 취지에 부합하는 역량있는 중개기관이 등장해 기성금융과 협력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과 정책적 뒷받침을 제공하는 것
- ☞ 사회적금융 활성화의 핵심 입법과제는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서민금융법 개정, 지방기금법 개정임

2.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 입법추진 현황

- '14년 이후 이제껏 발의된 기본법(안)은 6개로, 사회적경제 금융기반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면에서는 같지만 구체적인 실현 방법에 있어 차이 존재
- **(유승민의원 안)**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금융지원과 자본시장조성의 중요성을 제기하면서 정부가 사회적경제 발전기금을 조성하도록 규정. 기금 운영에 있어서는 공공기관인 한국사회적경제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열어 둠
- **(박원석의원 안)** 사회적경제 발전기금 재원에 복권기금과 휴면예금 포함,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사회적금융을 주 사업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
- **(윤호중의원 안)** '사회적금융'이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사회적금융 관련 제도정비, 민간 사회적금융기관 육성 및 전달체계 참여, 정부·지자체의 발전기금 조성과 민간기금조성 지원 등 사회적금융 관련 전반적으로 다룸
- **(강병원의원 안)** 가장 최근 발의된 이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해 여야 간 의견조율을 거쳐 도출된 안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회적금융 관련한 내용이 자본시장 기반 펀드조성 및 공급방식으로 크게 변화
 - (1) 정부의 사회적경제 발전기금 설치계획 삭제됨.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 차원의 시·도별 발전기금 조성계획은 그대로 유지
 - (2) 사회적금융기관 관련해 윤호중의원 안은 협동조합 금융, 사회적경제 공제기금, 비영리민간재단 등을 예시했는데, 강병원의원 안은 은행, 투자회사, 농수신협, 새마

- 을금고 등 금융당국의 감독범위에 들어가는 금융기관으로 제한.
 ⇒ 기존 안에서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으로 지칭된 조직들이 새로운 안에서는 ‘민간 사회적경제지원 중개기관’으로 분리됨
- (3) 정부의 재정적 참여는 사회적금융기관이 창업·벤처전문 PEF나 투자조합 등을 결성하면 해당 펀드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제약

표 2. 사회적경제기본법 발의안 사회적금융 관련 내용

법안	사회적금융 관련 내용
유승민의원 대표발의 (19대, '14.04) (20대, '16.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 설치) 정부는 사회적경제 금융기반 조성 및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사회적경제 발전기금 설치·운영 • (기금 운용) 기재부장관이 운용·관리하되 업무의 일부를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따라 신설되는 <u>한국사회적경제원에 위탁</u> 가능 ☞ 사회적경제조직 금융지원, 사회적경제 자본시장조성, 민간의 자발적 사회적금융 조성 촉진을 위한 재원마련 필요성 강조
박원석의원 대표발의 (19대, '14.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 설치) 사회적경제 발전기금을 조성하고, <u>복권기금과 휴먼예금이 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u> 규정 • (기금 운용) 기재부는 기금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u>사회적금융을 주 사업으로 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위탁</u> 가능 ☞ 기금의 재원 다양화, 기금운용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민간위탁 허용
신계륜의원 대표발의 (19대, '14.10) 윤호중의원 대표발의 (20대, '16.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 설치) 정부·지자체에서 수립하는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에 <u>사회적금융 시장조성 및 사회적경제 발전기금 운영방안</u> 포함 • (기금 운용) 관리감독은 기재부, 운영은 민간 사회적금융기관 전달체계를 통해 수행; 기금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호금융기관 등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에 위탁·운영 • (사회적금융 활성화) 사회적금융 정의, 사회적금융 제도정비, 사회적금융기관 육성, 발전기금 조성, 민간기금 조성지원 등 ☞ 민간조직의 역할이 강조되는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제시
강병원의원 대표발의 (20대, '19.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원 마련) 중앙정부의 사회적경제 발전기금 설치조항 삭제, 지역별 발전계획에 시·도별 발전기금 조성계획 포함 • (전달 체계) 국가와 지자체는 은행, 금융투자사, 보험회사,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등 <u>금융기관 중 신청을 받아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으로 지정</u> 가능하고 이와 별개로 사회적금융 활성화 위해 <u>민간 사회적경제지원 중개기관</u> 지정 가능 • (사회적금융 활성화) 정부는 민간 사회적금융기관 등에 출자 가능하고, 민간 사회적금융기관 등은 자본시장법·벤처기업법·중소기업창업법에 따라 창업벤처전문 PEF, 투자조합 등 결성 가능 ☞ 정부의 발전기금 조성 과 민간참여 방식의 전달체계 구상에서 자본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펀드 조성 및 공급 방식으로 변화

□ 사회적금융 관련 입법추진 방향의 문제점

- 20대 국회의 기본법 추진과정에서 사회적금융과 관련한 입법 방향이 변화됨
 - (기존) 정부·지자체의 **사회적경제 발전기금 조성**으로 기초자원 마련
비영리·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를 통해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
 - (변경) 자본시장 기반으로 **금융기관이 펀드를 조성하고 정부는 출자로 참여**
- 변화된 방향은 정부에서 발표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과 궤를 달리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사회적경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움직임과도 동떨진 것
- 사회적금융 활성화 관점에서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기존 금융시스템을 통한 자금공급이 갖는 한계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추진될 때 의미 있음
 - 현 단계 사회적금융 제도화의 목적은 “사회적경제 조직과 사회적경제 관련사업에 투자·용자·보증 등”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경제 금융기반을 조성하는 것
- ☞ ‘사회적금융기관’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기존 금융질서에 혼선을 주게 될 가능성이 우려된다면,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등 보다 제한적인 용어를 찾아내 사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와 충돌을 줄이면서 입법추진 방향을 변화시켜야 함

3.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 기금관련 조례 제정

□ 지자체 기금 관련 조례 현황

- 기본법 제정이 어려움을 겪는 것과 달리 지자체 사회적경제 조례제정은 활발히 진행되어, '20.2월 현재 17개 광역 지자체 중 16개 지역이 조례를 마련함²⁾
- ‘사회적경제 기금’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여 독자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곳은 서울, 경기, 세종, 충남 등 광역 지자체 4곳과 기초 지자체 7곳
- 7개 기초지자체 중 5곳은 ‘사회적경제 조례’ 안에 기금 관련 조항을 두고 있고, 기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다른 2곳은 사회적경제 ‘기금 조례’를 별도 제정함
- 광역지자체 4곳은 모두 별도의 기금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

2) '20.2월 현재 사회적경제 조례가 없는 충청북도에서도 도청 차원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됨

표 3.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기금 관련조례 제정 현황

구분	지자체	조례와 기금명칭	제/개정
광역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12년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16년
	세종시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8년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19년
기초	서울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사회투자기금)	'14년
	서울시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4년
	경기도 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육성기금)	'15년
	서울시 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15년
	서울시 강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투자기금)	'16년
	경기도 화성시	사회적경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8년
	전북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19년

표 4. 지자체 사회적경제 기금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지역	명칭	설치년도	조성액	비고
광역	서울	사회투자기금	2012	578	수행기관 통해 채용자, 출자
	경기	사회적경제기금	2016	170	직접, 신탁 통해 용자
	세종	사회투자기금	2018	10	
	충남	사회적경제기금	2020	100	지역 상호금융기관
	전북	(추진 중)	(2020)	-	
	경남	(추진 중)	(2020)	-	
	강원	사회적경제지원기금	2014	21	'16년말 기금 폐지
	광주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2013	-	'17년말 기금 존속기한 종료
기초	성북	사회투자기금	2014	12.5	
	성동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2014	16.0	
	은평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2015	7.7	
	강동	사회적경제투자기금	2018	2.2	
	화성	사회적경제지원기금	2015	629	

□ 지방기금법 개정 필요성

- 지역별 사회적경제센터의 확산과 함께 사회적경제 조례제정이 활발히 이루어진데 반해 사회적경제 기금은 확산이 더디고, 있던 기금이 폐지되기도 함
 - 강원도의 경우 '14년에 사회적경제 조례를 제정하면서 기금관련 조항을 마련하고 21억원 규모의 기금까지 조성하였으나 '16년말 기금을 폐지하면서 해당 조항 삭제
 - 광주광역시 '13년에 사회적경제 조례를 제정하면서 기금을 설치하되 존속기한을 '17년까지로 하는 조항을 두었으나 실제 조성은 하지 못한 채 만료됨
- '15년 행안부가 투명성 강화를 명분으로 「지방기금법」³⁾ 개정을 추진하여 기금의 민간위탁 근거조항이 삭제된 이후 기금을 행정직접 운영해야 하는 조건에서 민간 모두 기금조성에 적극성을 잃은 것으로 보임
 - 서울시에서는 민간의 전문성 활용과 기부금을 통한 추가재원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기금을 운영하였으나, 법률 개정으로 이런 시도가 위축됨
- '18년 정부의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시행으로 사회적경제 기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올해 경남, 전북 지역에서 기금 설치가 추진되고 있음
- 사회적경제 지자체의 기금운용에 민간이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금융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방기금법 개정이 필요함
 - '19년 중반 서울시에서 법안개정의 필요성을 행안부에 제출한 바 있고, 행안부에서는 연구용역을 통해 타당성과 관련한 근거를 확보한 상태

표 5. 지방기금법 민간위탁 관련 조항 개정 전후 대조표

개정 이전	개정 이후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u>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u> ,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3) 정식 명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4. 휴면예금 관련 서민금융법 개정

□ 20대 국회 서민금융법 개정 내역

- 20대 국회에서는 휴면예금 뿐 아니라 사실상 휴면상태에 있는 다른 금융자산도 서민금융진흥원이 관리하는 휴면계정에 출연되도록 서민금융법이 개정됨

표 6. 20대 국회 서민금융법 개정 내역

대표발의자	주요 내용	현황
박선숙 의원 ('17.6월)	장기 미청구된 자기앞수표 ⁴⁾ 도 휴면예금에 출연하도록 함	'17. 9 개정 '17.10 시행
전재수의원 ('18.8월)	기존 서민금융 지원체계 내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마련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들의 사업범위에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대출·출연·출자 등을 명시적으로 포함	계류
김종석 의원 ('18.11월)	실기주 과실(失期株 果實) ⁵⁾ 에 대해 휴면예금에 출연하도록 함	'19.10 개정 '19.11 시행
장제원의원 ('18.12월)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종류로 시행령에서 규정된 영세 개인사업자 및 사회적기업 신용대출 사업을 명시	계류

□ 정부, 「서민금융법」 개정 방안 발표 ('20.2월)

- 금융위원회는 '20.2.21 “지속가능한 서민금융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서민금융법 개정 방안”을 발표하고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
- (배경) '08년 금융위기 이후 정책 서민금융을 시행하면서 한시적으로 재원을 확보해 임시방편적으로 대응해 온 구조를 개선하여 서민금융 인프라로 안정화
 - 지속가능한 정책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근본적인 재원구조 마련
 - 고객재산보호 관점에서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을 통합 관리·반환하는 제도로 개편

4) 발행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청구된 자기앞수표, 법 개정 전에는 금융회사에서 잡수익으로 처리
 5) 예탁자를 통해 투자자에게 반환된 후 투자자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지 못해 예탁결제원이 주권의 권리를 행사하여 대신 수령한 배당금·주식, 무상주식 및 단주대금 등. '17년말 누적액 339억원.

- [1] 금융기관 출연제도 개편 (출연 금융기관 확대, 출연 상시화, 정부출연 매칭)
 - 출연 금융기관을 기존 상호금융,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전사 등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
 - 정부도 향후 5년 ('21~'25년) 동안 연간 약 1,900억원 추가 출연
- [2] 휴면금융자산 출연제도 개편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을 이관하는 제도로 개편)
 - 기존 예금, 보험금, 자기앞수표발행대금, 실기주과실에 투자자예탁금 등 추가
 - 종전의 '휴면예금' 용어를 '휴면금융자산'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자산 포괄
- [3] 서민금융진흥원 계정구조·지배구조 개편 (투명성·독립성 제고)
 - 휴면계정에서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위한 '자활지원계정' 분리 신설
 - 휴면금융자산관리위원장 진흥원장 겸임규정 삭제, 민간위원 중 1명 호선
- 기타 사업수행기관 지원방법 구체화 (운영비지원 등 가능하도록 추진)
- (향후계획) 입법예고 및 부처의견조화: '20.2.21 ~ 4.1
 -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 제출: '20.6~7월 중 (예상)
- ☞ 21대 국회에서 서민금융법 개정이 추진될 때 휴면예금을 사회적금융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입법 추진 필요

5. 사회적경제 자금공급 관련 유관법 개정

□ 협동조합 우선출자제 도입 ('20.3.31 개정, '20.10.1 시행)

- 협동조합 우선출자제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협동조합기본법이 개정되어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

표 7. 협동조합 우선출자제 내용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 정부 발의안, '18.2월)

<p>제22조의2(우선출자) ①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상태가 양호한 협동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은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다.</u></p> <p>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 1좌의 금액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과 같아야 하며, <u>우선출자의 총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기자본 2. 납입출자금 총액 <p>③ 조합원이 제2항에 따른 우선출자에 참여할 경우, 조합원 1인의 납입출자금 총액과 우선출자 총액을 합한 금액은 협동조합이 발행한 우선출자 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p>

- ④ 우선출자에 대해서는 의결권과 선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⑤ 우선출자에 대한 배당은 제22조에 따른 출자에 대한 배당보다 우선하여 실시하되, 그 배당률은 정관으로 정하는 최저 배당률과 최고 배당률 사이에서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선출자증서의 발행, 우선출자자의 책임, 우선출자의 양도, 우선출자자 총회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안)

- (우선출자 발행 제한) 경영상태가 양호하거나 경영투명성이 높은 협동조합만 우선출자를 받도록 하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지정
 - (1) 경영공시 대상 협동조합 (출자금 30억 이상, 또는 조합원 200인 이상, 60여개)
 - (2) 재무상태가 양호한 협동조합
(직전 3회계연도 기간 부채비율 100%이고 영업이익률 0% 이상 협동조합, 500여개)
- (조합원 우선출자 제한) 조합원이 우선출자에 참여할 경우는 일반출자한 것과 우선출자 한 것을 합해서 30%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표 8. 사회적경제 자금공급 관련 법개정 추진 내역

개정안	대표발의자	주요 내용	현황
협동조합 기본법	정부 ('18.2월)	협동조합 내부자금 확충을 위해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 허용	'20.3 개정 '20.10 시행
	김병욱의원 ('18.10월)	협동조합이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를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	계류
국민생활 기초보장법	남인순의원 ('18.9월)	자활기금을 재원으로 한 자활지원사업의 적극적인 실시를 위해 보장기관의 자활기금 설치 의무화	'19.1 개정 '19.7 시행
사회적기업 육성법	이규희의원 ('19.4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투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계류
신협법	전재수의원 ('19.2월)	신용협동조합이 사회적 경제조직과 상호협력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범위를 정함 신협중앙회에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조합의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이차보전과 손실지원에 사용	계류

5. 사회성과보상사업 관련 입법추진

□ 지자체 조례제정 및 사업현황

- 국내에서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각각 '14년과 '15년에 조례를 제정하여 2~3년 기간의 1차 사업을 이미 시행한 바 있음
 - 행안부에서는 '17년 하반기 사회성과보상사업 지침을 제작해 배포하고, 권역별 설명회, 아이디어 경진대회 통해 지자체의 참여 독려
 - 15개 지자체와 행안부가 참여하는 'SIB 지방정부협의회' 가동 중
- 현재 광역지자체 5곳, 기초 지자체 3곳에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조례 제정함

표 9. 지방자치단체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조례 제정현황

구분	지자체	제정시기	사업추진 내역
광역	서울시	'14. 3월	1호. 경계성 지능장애 아동교육 사업 ('16.8월 개시, 3년) 2호. 청년실업 해소 ('20년 개시, 3년)
	경기도	'15. 7월	1호. 기초생활수급자 탈수급 사업 ('16.12월 개시, 2년)
	광주시	'18. 4월	-
	제주도	'18.10월	-
	인천시	'19. 9월	-
기초	경기 수원시	'17. 9월	-
	경기 안양시	'19. 7월	-
	충남 부여군	'19.12월	-

□ 국회 입법추진 현황

- '19.4월 채이배의원이 「공공성과보상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제윤경의원이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 전자는 SIB관련법을 신규제정하는 안이고, 후자는 기존 지방재정법을 일부 개정해 지자체 차원의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보강하려는 시도
- '19.9월 김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채이배의원 안과 큰 틀에서는 동일한데 민간 운영기관이 사회성과채권(Social Impact Bond)을 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담고 있음
- 현재 3개안 모두 국회에서 계류되어 있음

표 10. 사회성과보상사업 관련 입법추진안

구분	법률안 및 주요 내용	현황
채이배 의원 안 (‘19.4월)	공공성과보상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공공성과보상사업’ 정의 - 공공기관이 보상 주체 - 행안부장관 소속 공공성과보상사업 정책위 구성,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 공공기관장은 타당성평가, 심의위원회 거쳐 공공성과보상사업 추진 -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장은 국회와 지방의회 의결 거쳐 계약체결 - 심의위원회 선정 평가기관이 성과 평가 후 이를 토대로 사업비 지급	계류
제윤경 의원 안 (‘19.4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 <u>사회성과보상사업</u> ’ 정의 - 지방자치단체가 보상 주체 - 지자체장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해 고시해야 함 - 지자체장 소속 사회성과보상사업심의위원회 설치 - 지자체장이 사회성과보상계약을 체결하려면 지방의회 의결 필요 - 지자체장은 계약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하고, 지급연도 예산에 반영	계류
김정호 의원 안 (‘19.9월)	공공성과보상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공공성과보상사업’ 정의 - 공공기관이 보상 주체 - 정책위 구성과 기본계획 수립, 심의위원회 설치, 계약 전 의회 심의, 독립된 평가기관에 의한 성과평가 등 채이배의원 안과 큰 틀에서 동일 - <u>운영기관은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원 조달을 위해 사회성과의 달성과 지급의무가 연계되는 채권 발행 가능</u>	계류



Memo

A large, empty rectangular area with rounded corners, enclosed by a thin grey border. This area is intended for writing the memo's content.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정책토론회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 조례 제정”

기조 발제2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기금 조례 제안

이현민 사회적금융위원장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회적경제 기금 조례 비교 : 전라북도, 경기도, 충청남도

구분	전북	경기	충남
명칭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2.29	2019.10.30
목적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적 신용을 통해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의 성장, 구축 및 활동과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을 설치하고, 단기적 자금순환에 급급한 자본이 아닌 인내자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적경제 활동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적경제”란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본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른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 가치”란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본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내용을 말한다. 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단체로서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본조례」 제2조 제3호에 따른 조직 등을 말한다. 4. “사회적금융”이란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적경제”란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공유경제”란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간, 물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3. “사회적경제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적경제”란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1호에 따른 경제 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2호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3. “사회적금융기관”이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융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p>조례」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운영되는 금융을 말한다.</p> <p>5.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본조례」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조직을 말한다.</p>	<p>회적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단체로서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 등을 말한다.</p> <p>4. “공유단체”란 공유경제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p> <p>5. “사회적금융기관”이란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운영되는 금융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p> <p>6. “사회적 신용평가”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 경제와 공유경제의 특성을 반영한 신용평가 모델, 자산평가 모델을 말한다.</p>	
<p>설치 및 존속 기한</p>	<p>①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p>②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사업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사업의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기금 운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례의 개정으로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p>	<p>① 사회적경제 활동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p>②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사업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사업의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기금 운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개정으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기금 조성</p>	<p>1. 전라북도의 출연금 2. 민간기업 및 개인의 기부금 3. 기금운용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p>	<p>1. 경기도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p>	<p>1. 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출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p>
<p>용도</p>	<p>기금은 도 관할지역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지원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 및 기업 설립 또는 운영 지원 2.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3.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을 위한 자금 투·융자 및 투·융자손실액과 사회적 금융기관과의 협력사업 4. 사회적경제 조직에 관한 자금 융자의 이차차액 보전 5. 사회적금융기관 육성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 및 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p>	<p>① 기금은 사회적경제 및 공유경제 단체와 조직, 기업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타당한 신용평가 모델과 자산평가모델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사회적경제 및 공유경제 육성과 지원을 위한 투자, 대출, 보증 및 사회적 금융기관과의 협력사업 2. 사회적경제 조직 및 공유단체 설립 또는 운영지원 3.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 및 공유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p>	<p>기금은 도 관할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지원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 3. 사회적경제 조직에 관한 자금 투·융자 및 투·융자 손실액 4. 사회적경제 조직에 관한 자금 융자의 이차차액 보전 5. 사회적금융기관 육성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p>
<p>운용 관리</p>	<p>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전라북도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전라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p>	<p>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경기도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p>	<p>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도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p>
<p>운용 계획</p>	<p>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기금관리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기금관리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기금관리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및 작성은 기금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작성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전라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p>	<p>②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및 작성은 기금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작성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②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및 작성은 기금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작성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p>
<p>위원회 설치</p>	<p>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실·국장 2. 전라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사회적경제에 대한 학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p>⑤ 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전체의 60</p>	<p>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장은 연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12.29.></p> <p>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업무 실국장 2.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사회적경제조직 및 공유단체에 대한 학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p>⑤ 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어느 한 성의 비율이 전</p>	<p>① 기금의 운용관리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 사회적경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실·국장 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학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p>⑤ 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p>

	<p>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p> <p>⑥ 제4항 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p>	<p>체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p> <p>⑥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p>⑥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p> <p>⑦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담당업무 팀장 으로 한다.⑧ 기타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p>
기능	<p>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p> <p>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p> <p>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p> <p>3. 그 밖의 기금의 관리·운용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p>	<p>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p> <p>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p> <p>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p> <p>3. 사회적 신용평가 모델 마련</p> <p>4. 사회적 금융기관 활성화 및 연대, 연계에 관한 사항</p> <p>5. 그 밖의 기금의 관리·운용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p> <p>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p> <p>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p> <p>3. 그 밖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p>
위원회 운영	<p>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p> <p>1. 정기회의는 년1회 개최</p> <p>2.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없음</p>	<p>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p> <p>1. 정기회의는 년1회 개최</p> <p>2.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3.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p> <p>②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천재지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불참석할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p> <p>③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3. 재적위원의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p> <p>②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천재지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불참석 할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③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p>
수당	<p>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전라북도위원회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p>	<p>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관리 공무원	<p>①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p> <p>1. 기금운용관 : 담당업무 실·국장</p> <p>2. 기금분임운용관 : 담당업무 과장</p> <p>3. 기금출납원: 담당업무 사무관</p> <p>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p>	<p>①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p> <p>1. 기금운용관 : 담당업무 실·국장</p> <p>2. 기금분임운용관 : 담당업무 과장</p> <p>3. 기금출납원: 담당업무 사무관</p> <p>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p>	<p>①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p> <p>1. 기금운용관 : 담당업무 실·국장</p> <p>2. 기금분임운용관 : 담당업무 과장</p> <p>3. 기금출납원: 담당업무 사무관</p> <p>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p>
기금 회수	<p>도지사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p>	<p>도지사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p>	<p>도지사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p>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본조례」 제14조(재정지원 및 기금의 설치)에 의거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본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른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 가치”란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본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내용을 말한다.
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단체로서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본조례」 제2조 제3호에 따른 조직 등을 말한다.
4. “사회적금융”이란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본조례」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운영되는 금융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본조례」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사업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사업의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기금 운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례의 개정으로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해 전라북도 기금을 설치·운영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전라북도와 시·군의 출연금
2. 민간기업 및 개인의 기부금
3. 기금운용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도 관할지역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지원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 및 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 지원

2.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3.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을 위한 자금 투·융자 및 투·융자손실액과 사회적 금융기관과의 협력사업
 4. 사회적경제 조직에 관한 자금 융자의 이자차액 보전
 5. 사회적금융기관 육성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 및 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계좌로 관리하여야한다.

- ② 기금은 전라북도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전라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한다.

제7조(기금운용계획)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기금관리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및 작성은 기금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작성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전라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실·국장
 2. 전라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사회적경제에 대한 학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 ⑤ 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전체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⑥ 제4항 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 2.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3. 그 밖의 위원회 운영 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4. 제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1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 3. 그 밖의 기금의 관리·운용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1. 정기회의는 년1회 개최
 - 2.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3.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 ②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천재지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불참석할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 ③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전라북도위원회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5조(기금관리공무원) ①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 1. 기금운용관 : 담당업무 실·국장
- 2. 기금분임운용관 : 담당업무 과장
- 3. 기금출납원: 담당업무 사무관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결산 및 보고)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운용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금운용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 받아야 한다.

제17조(기금의 회수 등) 도지사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정토론

전북 사회적경제 기금 조례 쟁점

- | | |
|-----------|---|
| -기혜림 회장 | 전북사회적기업협의회 |
| -고선미 전무이사 |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사회서비스위원장 |
| -송금현 과장 |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과 |
| -황영모 박사 | 전북연구원 |

지정토론 01

전북 사회적경제 기금 조례 쟁점

기혜림 회장 전북사회적기업협의회

- 사회적경제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해서 취약계층의 고용창출 및 윤리소비에 기여 등 사회목적을 실현하는 착한 기업임
 - 사회적기업은 그동안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문제, 부족한 사회서비스 확충으로 시작하여 이제는 빈곤, 지역활성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의 역할을 수행해 왔음
 - 또한, 사회적기업을 통해 5만명의 일자리를 창출 하였고, 특히 일자리의 70%는 저소득층 등 취업 애로계층을 위한 일자리로서 그 가치를 더함
- 사회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역사회와 민간의 관심과 기대가 증가되고 있음
- ' 17.8월 現정부에서 100대 국정과제에 ‘사회적경제활성화’가 채택되어,
 -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혁신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추진하고 있음
- 아시다시피 도내 영세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시장개척에 가장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
 - 현재 전라북도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은 대부분 소기업 경영체제로서 사실상 마케팅 및 판로개척이 매우 취약한 실정임
 -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은 기업 소재지 및 특성, 자금 부족, 경영정보 부족 등 체계적인 판로개척에 열악한 상황임

○따라서 공공기관이 적극적인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를 통해서 사회에 공헌하고, 사회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필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비중 확대 등 적극적인 지원은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이 건강한 사회적경제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중요

○공공시장에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상품 및 서비스의 판로 보장이 절실한데도 '18년도 공공기관 및 전라북도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보면,

-공공기관 전체는 1조595억원으로서 전체 구매액(46조7,554억) 중 2.27%인데, 이 가운데 전라북도는 4.4억원으로 총 구매액(572억원)의 0.77%로서 전체 자치단체(17개)중 최하위권인 16위*를 차지하는 매우 저조한 실적임

* '17년도는 총 구매액(609억원)대비 7.8억원(1.28%)로서 전체 13위

-서울시의 경우는 구매액의 5%가량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할 것을 조례로 정함

-따라서 전라북도도 우선구매제도를 조례로 정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로를 공공기관에서 앞장서 주길 바람

(단위: 백만 원, %)

구분	총 구매액[A]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B]	비율(B/A)
공공기관 전체	46,755,468	1,059,549	2.27
전라북도(16위)*	57,233	441	0.77

< 자치단체별(17개) 구매실적 >

(단위: 억원)

전체	서울	제주	광주	대전	세종	충북	울산	전남	강원	경북	대구	인천	충남	경기	경남	전북	부산
총구매액(A)	3,097	1,358	491	480	805	575	601	683	1,022	914	745	602	815	1,821	769	572	561
사회구매(B)*	268	108	25	20	27	18	16	18	27	21	16	10	10	22	6.8	4.4	3016
비율(B/A)	8.66	7.96	5.12	4.28	3.44	3.14	2.78	2.76	2.72	2.38	2.22	1.8	1.24	1.22	0.88	0.77	0.54
순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사회구매 :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 <자료 : 고용노동부 공고 2019-202호>

○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우선구매 조항이 없음. 다만 홍보에 노력한다는 것에 그치므로 현재와 같은 실적을 보여 주고 있음

-금융지원도 좋지만 기업들에게는 판로 및 품목확대 가 가장 중요함. 그러니 조례에 우선구매 및 의무구매 조항을 넣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의 ‘2015 사회적기업의 자금조달 실태조사’ 결과, 자금조달 과정에서 담보, 신용보증 등의 높은 진입장벽, 사회적 가치 심사기준 모호, 담보위주의 심사, 정보 부족등으로 일반 기업에 비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제도권 금융기관 역시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대출 기준을 분명하게 갖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기가 일반 기업에 비해 까다로운 상황임.

○ 동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8조(위원회의 설치)에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음

-위원에 도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사람이 빠져 있음. 사회적경제기금의 실질적 운용을 위해서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실제 목소리를 듣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위원에 사회적경제기업 조직에서 추천하는 사람 또는 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해야함

1.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실·국장
2.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사회적경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기금운용 또는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5. (신설)전라북도내 사회적경제기업 조직에서 추천하는 사람 또는 대표

-또한 동 위원회는 심의기능만 있고 의결 기능은 없음

-심의기능만 가지고는 실행력을 담보할 수 없고 단지 형식적인 보여주기식 행사로 끝날 수 있으므로 동 위원회는 심의 및 의결 기능을 추가 할 필요가 있음

○금번 기금 설치는 현재 미소금융, 중소기업정책자금, 신보 및 지역신보 등 기존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됨.

-향후 기금 운용시 기존 서울시 등 기 운용중인 타 지자체 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문제점 등을 대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번 기금 설치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활동에 대해 공공을 비롯한 시중은행 및 민간기업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며, 이로 인한 다양한 금융제공 방법의 변화가 필요함

-기존의 금융기관은 사회적경제기업에게 금융지원을 할 때 기업에 대한 평가가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평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재무적 측면에서 취약한 사회적경제기업은 금융지원 혜택을 적게 받고 있음

-자금 융자 회수의 리스크 관리로 인해 물적 담보 및 영업실적, 융자기간 등에 대한 일반 기업수준으로 금융 지원 자격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적경제기업에게 큰 부담이 됨.

-사회적경제 기업은 일반 기업과 달리 이윤창출 보다 사회적 가치활동을 목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을 반영하여 융자 및 보증, 투자 대상 선정 기준 방향 전환이 필요함.

-따라서 물적 담보 대신에 사전심사 및 현장실사 등 사회적 성과에 기반한

평가시스템을 통해 대출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현재 지방재정법 상에서는 기금의 운용을 공무원이 담당해야 하는 관계로 기금의 원금을 보전하는 선에서 소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음

-원금보전을 전제로 보수적으로 기금을 운용하면 단순용자 중심의 사업에만 몰두하는 결과 초래할 우려가 있음

-즉 일반금융 기관과 큰 차이 없이 담보제공 등의 조건을 요구하거나 용자의 경우도 상환기간등이 일반용자상품과 큰 차이 없는 경우

-또한 일부 잘나가는 기업 중심으로 지원이 편중한다면 결국 지원이 꼭 필요한 소규모·영세·신생·미성장 기업으로는 혜택이 돌아가지 못해 기금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음

○결론적으로 동 기금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실정과 수요를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으로 상품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갖출 필요가 있음

-심사기준, 상환조건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가치 및 낮은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기금 운영이 필요함

-사회적가치는 낮지만 수익성이 높은 사업과 사회적가치 높은 사업에 대한 이자율 및 대손을 차등하게 적용하는 등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Memo

A large, empty rectangular area with rounded corners, enclosed by a thin grey border. This area is intended for writing the memo's content.

지정토론 02

전북 사회적경제 기금 조례 쟁점

고선미 전무이사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사회서비스위원장

지정토론 03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방안

송금현 과장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과

□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현황

- (조직현황) 1,567개(사회적기업 253, 마을기업 103, 협동조합 1,123, 자활기업 88)
- (인력기반) 대학(원) 사회적경제 학과·과정 운영(군산대, 우석대, 군장대)
- (민간역량)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의 풍부한 연대역량과 경험
- (지원역량) 도 중간지원조직(경진원, 전북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센터) 활발한 활동
- (시군) '시군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구축 지원'으로 기존 3개소(전주, 익산, 완주)에서 추가 5개소(군산, 남원, 진안, 고창, 무주) 구축 운영 준비 중

□ 사회적경제기업 경기실태조사

- (주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조사대상) 사회적경제기업 945개
- (응답률) 46.45%(응답 439개)
- (조사내용) 자금여건, 인력여건, 판로여건, 지원필요정책
- (조사결과)

구분	조사기간	자금여건	정책수요
1차	3.12.~3.16.	85.0% 악화	자금지원(62.3%)>판로지원(28.8%)>인력지원(8.4%) 순
2차	3.26.~3.30.	74.2% 악화	자금지원(60.9%)>판로지원(28.3%)>기타(6.3%)>인력지원(4.5%) 순
3차	4.08.~4.12.	73.3% 악화	자금지원(54.4%)>판로지원(33.9%)>기타(6.3%)>인력지원(5.2%) 순

□ 타 시도 기금 운용 사례

○ 경기도 사회가치벤처펀드(사회적경제기업 용자)

- 펀드규모 : 148.5억원, 기업별 최대한도 3억원
- (운영방법)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을 지역신협에 대여·용자
- (대여조건) 금리 연0%, 지역신협에서 원금 반납의무
- (운용기관) 지역신협(신협중앙회 역할-지역신협 관리, 지역신협 용자 실행)
- 용자대상 :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이 도내 소재하는 영업활동중인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 용자조건 : 금리 신용3.0%, 담보 2.5% 이내, 최대10년
 ※ 사회가치평가에 따라 이차보전 최대 2.0%까지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운용 계획(추진중)

- 운용규모 : 200억원
- 조 성 액 : 17~ 20억원(3년간) * 손실추정액 6.3~8.8억원, 이차보전 11억원
- 기금재원 : 도 출연금
- 사업내용 : 기업 용자·투자 및 이차 차액보전 등(단계적 추진)
 * (1단계/20~22년) 사회적경제 기업 용자 → (2단계/23년~) 투자 등
- 기금용도 : 용자 시 미회수 손실액 기관분담, 이차차액보전
- 운용방법 : 도 직영(수행기관 선정 기금운용 등)
- 금후계획 : '20. 제2회 추경예산 반영(550백만원 / 5.25.의결), 7월 시행예정

□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사례(전북신용보증재단)

○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 ('17년) 4건 136백만원, ('18년) 7건 390백만원, ('19년) 0건

○ 코로나19 소상공인 특례보증 : 12개기업* 330백만원

- * 마을기업 1, 사회적기업 8, 협동조합 3

□ 사회적경제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

* 대안 1~3.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금융시스템 구축 방향'(전북연 정책과제의 제안 내용)

- (대안1) 기존 기금(자활, 중소기업육성기금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
 - (장점) 기존 기금에 사회적가치평가지표를 적용하는 것으로 추가 예산확보 불필요
 - (단점) 사회적가치평가지표 일괄 적용 한계, 사회적경제조직 중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발생
- (대안2) 기존 기금의 일부를 떼어내 사회적경제기금을 신규 조성하는 방안
 - (장점) 추가 예산확보 불필요, 사회적경제기금으로서의 기능 가능
 - (단점) 기존 기금으로부터 예탁금 형식으로 분리, 추가 재원확보 필요
- (대안3) 기존 기금 중 일부를 통폐합하여 사회적경제기금을 조성하는 방안
 - (장점) 추가 예산확보 불필요, 사회적경제기금으로서의 기능 가능
 - (단점) 기존 기금 통폐합 애로
- (대안4) 신규 사회적경제기금을 조성하는 방안
 - (장점) 사회적경제기금으로서의 기능 가능, 불필요한 마찰 없음
 - (단점) 추가 예산확보 필요

▶ 사회적경제기금 조례 제정 필요 : 대안 2~4

▶ 추가 예산확보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시, '대안4. 신규 사회적경제기금 조성하는 방안' 이 현 상태에서 가장 바람직



Memo

A large, empty rectangular box with rounded corners, intended for writing a memo.

지정토론 04

사회적경제 인프라로서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방향

황영모 박사 전북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장

1. 사회적 금융의 필요성과 특성

- 사회적 금융은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 조직의 금융지원에 초점을 둔 자본조달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관한 사항에 관한 내용
-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 정책과 연계하여 정책지원의 대상이 되어 왔으나 자체적인 자본축적은 물론 정책지원을 제외한 외부로부터의 자본조달에 한계가 큼
- 대표적인 사회적경제 조직인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등은 자본조달의 한계에 직면해 있고 금융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장기적 투자의 제약이 커 성장은커녕 지속가능 경영도 어려운 실정
- 사회적금융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자본조달 방안을 넘어서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과 지역개발을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로서 의미를 가짐
- 일반적으로 사회적금융은 '①가치 지향적, ②관계 지향적, ③임팩트 지향적'인 특성을 가짐
 - ①가치 지향적 : 사회적금융은 개인과 사회의 이미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공헌하고자 하는 목적이 강함 (수익률과 상환율에 근거한 투자의 한계와 대조)
 - ②관계 지향적 : 금융거래를 통해 매개되는 예금자-투자자-대출자 사이의 관계를 넘어 금융을 통해 공동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성격이 강함
 - ③임팩트 지향적 : 가치 지향적 신용을 매개로 사회문제의 해결과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임팩트 금융임

* **임팩트(impact)** : 재무적 수익 외 비재무적인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영향을 포괄하는 것, 사회적금융은 경제적 영역을 포함하여 이와 관련된 임팩트를 통해 사회혁신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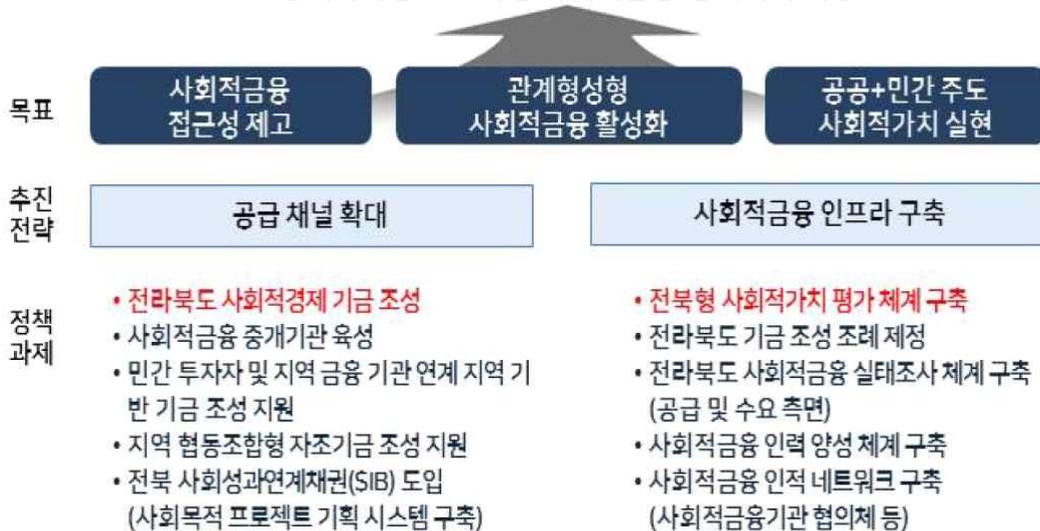
2. 전라북도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방향

- 목표와 기본방향

- ① 사회적금융의 접근성 제고 : 사회적금융의 수요와 함께 공급자 입장에서 사회적금융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함
- ② 관계지향형 사회적금융 활성화 : 사회적 관계 형성으로 사람과 사람을 잇는 관계의 중개로 투명한 거래관계가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③ 공공+민간주도 사회적가치 실현 : 민관 합동의 사회적 가치 실현 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해 공공이 선도하되 민간의 참여로 확대해야 함

- 사회적금융 생태계를 위한 3대 조건 : ①지역사회의 사회적금융 수요 확보, ②사회적금융 지원을 위한 지역의 도소매 기금 형성, ③사회적금융 생태계 작동을 위한 금융인프라 형성

[지속가능한 전복형 사회적금융 생태계 구축]



자료 : 김시백·황영모·배균기(2019),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금융시스템 구축방향', 전북연구

3. 전북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의미와 내용검토

- 대출 중심의 자본조달과 운용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용자와 함께 적극적인 투자를 실현할 수 있는 자금 공급원의 확보가 중요
-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업과 활동의) 핵심역량을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혁신을 위해서는 지역단위의 독립적인 투·용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지역사회 주도의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이 필수
- 사회적금융의 경제 기금사회적금융의 관점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본조달에 필요하고 유리한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함
- 사회적경제 기금의 기대효과
 - ① 사회적경제 기금은 장기적 관점에서 운용되기 때문에 사회적경제 조직으로부터 투자금 회수의 기간을 고려할 때 자금제공의 주체
 - ② 기금은 독립적 운영이 가능하고 책임규명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투자손실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가 가능
 - ③ 기금은 다양한 조달 방식이 가능하고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음
- 기금의 조성 : 전라북도 출연금과 같은 순수 공적기금으로 조성하면 공공성에 따른 경직성이 있어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 수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음 → (소규모라도) 민간의 기금참여와 14개 시군 참여 방안을 검토
- 기금의 용도 :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투자, 대출, 보증, 협력사업 등이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지역사회 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 프로그램으로 구체화 필요 → 사회성과보상사업 등의 정책 프로그램
- 기금운영 주체 :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등의 인프라 한계를 고려하여 통합기금의 예탁과 운영이 불가피 → 중장기적 관점에서 별도의 사회적금융 운용주체(중개기관 등)을 프로젝트 방식으로 육성을 검토
- 사회적가치 평가 시스템의 마련 : 사회적경제 조직 등 금융수요자에 대한 대출심사와 금융지원의 기준을 위한 사회적가치 평가체계를 구축할 때, 사회적경제 금융의 조성, 공급, 수요의 저변과 역량을 갖출 수 있음



Memo

A large, empty rectangular box with rounded corners, outlined in a thin grey line. This box is intended for writing the memo's content.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정책토론회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 조례 제정”

종합토론

전북 사회적경제기금 조례 제정 쟁점



참고자료

- 사회적금융의 대응현황과 쟁점
2020 제12회 사회적경제정책포럼
(2020.5.14. 온라인중계)

코로나 위기, 사회적경제의 접근법과 역할

사회적금융의 대응현황과 쟁점

- 장 지 연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유례없는 3-4월을 뒤로하고 하루 확진자 한자릿수 대 소식 속에 시작한 5월은 삶의 면면을 구성하는 촘촘한 고리들이 차츰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글로벌 교류에 기반한 영역은 좀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모임과 행사가 재개되고 등교개학이 시작되면 생활의 상당 부분이 예전처럼 돌아가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느닷없이 닥친 질병과의 싸움에서 일정 수준 통제력을 확보한 지금, 다시 인간들끼리의 문제를 풀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코로나 이후 어디까지 회복이 가능하고, 어디서부터 이전과 다른 상태에 놓이게 되는가? 또는 새로운 상태로 이행시켜야 하는가? 재난의 흔적은 누구에게 남겨지고, 복구의 과정은 어떠해야 하며, 고통과 손실은 어떻게 분담해야 하나?

공동체는 자신에게 닥친 사건·사고를 해석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공유하는 가치와 원칙을 확인하면서 스스로를 만들어 간다. 전지구적으로 돌아가는 일상에 브레이크를 걸고 개개인 모두의 행동에 일정한 제약을 부과한 이번 사태는, 상황을 빠르게 수습해 모든 그래프와 수치를 제자리로 돌리려는 노력만으로 해소되지 않는 강렬한 의심을 남겨 주었다. 이곳의 사정은 후차적으로 미루고 여러 면에서 부지런히 배우고 따라가려 했던 저곳의 시스템이 위기 상황에 필수적인 물품과 서비스마저 서로 융통할 수 없는 상태임을 함께 목격한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보다 근본적인 성찰과 변화의 구상을 담은 회복의 과정이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이유이다.

정부는 4월말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첫회의를 개최하고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비대면 산업 중심 “규제혁파를 통한 산업육성 방안”을 비중있게 발표하였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방안”도 예고하고 있는데, 이 또한 디지털 기반 대형 IT 프로젝트 기획추진을 대표적 사례로 언급하고 있다. 아직은 코로나 이후 새로운 사회경제 질서를 염두에 둔 통합적 접근보다는 그간 경제를 떠받치고 산업을 육성해 온 관행대로 대응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가 충격에서 회복되어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사회적경제가 책임있는 실천 단위로 대안적 질서를 염원하는 이들과 함께 균형추 역할을 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사회적경제 조직의 피해복구와 회복 방안 역시 보다 큰 틀에서 검토되고 추진되는 것이, 유례없는 피해에 대한 대응력과 재원확보 측면에서 더 효과적일 것이다.

I. 피해대응과 고용유지

2~4월 기간 소상공인들의 매출액 변화를 조사해 발표한 정부 자료에 따르면 2월에 약 30%, 3~4월에는 60%씩 매출이 감소하였다.¹⁾ 조사에서는 4월부터 서서히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5~6월 사이 예년 수준으로 돌아간다면 연중 매출 감소는 15~20% 수준이 된다. 문제는 이 정도가 기본이라는 것이고, 업종에 따라 훨씬 더딘 분야가 있으며, 국제교역의 불확실성과 실업증가로 인한 경기침체, 감염병 재유행 가능성 등으로 악화될 가능성마저 존재한다는 사실이 마음을 줄이게 한다.

'18년 사회적기업 매출규모는 4.1조원이고 협동조합은 2.6조원으로, 중복을 제외하고 두 부문을 합치면 6.5조원이다. 여기에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부문까지 더하면 전체 매출은 약 7.6조원 규모가 된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은 당기순이익율이 각각 1.9%, 4.0%로 낮은 수준이다. 사회적기업의 경우 매출총이익율은 약 35%이고, 고정비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67%이다. 이 구조를 대입하면 사회적경제 전체 매출이 20% 감소할 때 연간 매출총이익은 5천억 정도 감소한다. 인건비 비중이 높고 유보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매출의 급격한 하락은 고용안정성을 위협한다.

가. 피해대응 현황

기업들은 미리 받아둔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한도를 채워 보증부 대출을 받거나 담보 대출을 받기도 하고,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용자사업을 찾아보며 견디고 있다.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운 기업들은 유급 또는 무급으로 휴업·휴직을 시행하면서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이 경우 정부로부터 1년에 180일 한도 안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휴직·휴업 수당의 기업체 부담분과 인건비 외 비용은 대출 등을 통해 해결한다.

영업이 저하된 상태에서 사업체를 유지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손실되는 비용이 대출로 쌓이는 게 부담스럽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크기의 자금은 이런 형태로 공급되고 있다. 대출 방식의 해결을 부담스러워하는 기업은 기부·후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거나 지원사업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도 한다.

일시적으로 늘어난 부채는 만기를 조정해 가며 영업활동으로 상환하거나 특별한 상황에서 출자로 전환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경제 기업은 배당이 원칙적으로 금지·제한되어 있기도 하고 상장이 드물어 일반적인 금융시스템 안에서 출자전환은 어렵다. 현실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낮은 영업이익률을 감안하면 좀 더 유연한 지원방안이 보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1)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소상공인, 코로나19 타격 딛고 '기지개'", 2020. 4. 29

나. 고용유지를 위한 추가 지원

관련해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을 참고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 인건비, 임대료, 주택담보대출 및 부채상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대출하되, 일정기간 고용을 유지하면 용도에 맞게 사용된 금액만큼 탕감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유사한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려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기업체 부담분 인건비와 임대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대출하고 1년 후 고용유지 상태를 확인해 출자전환 또는 탕감하는 ‘사회적경제 특별 고용유지 지원사업’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직원의 30% 이상이 취약계층인 기업부터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

’18년말 사회적경제 고용규모는 약 10만명이다(<붙임1>).²⁾ 취약계층 근로자는 사회적기업에 2.6만명, 협동조합에 1.1만명이 근무하고 있다. 여기에 자활기업 참여자 1.1만명을 더하면 약 4.8만명의 취약계층 근로자가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근로자 본인이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가족도 어려운 처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 실업의 위협은 더욱 큰 고통으로 다가온다.

앞서 코로나 피해액을 약 5천억원으로 가정했는데, 그중 2/3는 노무비이고 이 금액의 약 절반을 고용유지지원금 등으로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면 기업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금액은 약 3,300억원이 된다. 이 금액의 30% 정도를 정부에서 사회적경제 긴급지원 예산으로 편성해 고용유지의 특별한 목적으로 지원한다면, 고용조정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약속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 불안정 노동자를 위한 안전망 확충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사회가동이 중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이 업종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1분기 경제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는 서비스업과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되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³⁾

사회적경제 기업의 업종별 분포 현황을 보면, 사회적기업은 제조(28.8%) - 도소매(11.3%) - 교육(10.4%) - 문화예술(9.9%) - 시설관리·사업지원(9.3%) - 보건·사회복지(8.7%) 업종 순이고, 협동조합은 도소매(22.1%) - 교육(15.0%) - 농림어업(9.4%) - 문화예술(9.0%) - 제조(8.9%) 업종 순이다. 일반 창업기업과 비교하면 사회적경제 전반적으로 교육, 문화예술, 돌봄 분야에서 창업이 활발하고, 사회적기업은 제조업과 시설관리, 협동조합은 농림어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붙임2>).

2) 생협, 신협, 농수축협 등 개별법 기반 협동조합은 제외한 수치

3)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제6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020. 5. 1

교육·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들은 협동조합에 임금근로자가 아닌 조합원 신분으로 참여해 일감을 함께 확보하고 나누는 방식으로 일한다.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직원 외에 고용이 아닌 거래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종사자들이 많다. 이 분야는 모두 피해가 큰 서비스업종이면서도 이처럼 피고용자 신분이 아닌 형태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 고용보험을 통한 실업부조를 받을 수 없다.

정부는 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 93만명에게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노무 미제공, 또는 소득감소 내역이 확인되면 최대 3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조치는 긴급상황에 임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번 기회에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사회적경제 영역 안에서도 조합원이나 거래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등이 참여하는 '노동공제회' 설립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는데, 이제 좀 더 과감한 구상과 실천이 필요하고 또 가능한 시간이 되었다.

노동공제회는 상호부조와 소액대출을 통해 질병·상해·실업 등 크고 작은 규모의 재난에 대처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이다. 조합원의 회비와 출자금을 기반으로 설립될 수 있으나 회원들이 모일 수 있는 마중물 성격의 초기 자금이 마련되지 않으면 제대로 운영되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된다. 국내 대부분 공제회는 초기 재원을 정부로부터 출연받으면서 개별법 기반으로 출발하였다. 과학기술인공제회는 2002년 설립 당시 정부로부터 200억을 출연받았고 이후 과학기술발전장려금 형태로 정부와 민간 재원을 단계적으로 추가 조성한 바 있다.

자활 영역의 <주민협동회>, 공익활동가 공제조직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안산·시흥 지역 노동자들이 설립한 <좋은이웃>, 화섬식품노조 산하 <봉제인공제회> 등 여러 가지 시도가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는데 일정 수준의 재원이 받쳐 준다면 불안정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크게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5월부터 전국민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 가운데 자발적 기부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조성되는 자금의 일부를 활용해 불안정 노동자들을 위한 공제회 설립을 지원한다면 실업부조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사회안전망을 확장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또는 서민을 위한 금융지원 목적으로 조성된 미소금융재단의 자금을 전향적으로 활용해 추진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II. 위기극복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정부는 4월말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위기와 고용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일자리 55만개를 만들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⁴⁾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위기가 시작되었고 향후 수출이 감소하면 대량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면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는 비대면 서비스산업 육성 등 ‘디지털 뉴딜’, 생활형 사회간접자본을 포함한 확장된 개념의 ‘SOC 뉴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메꾸는 ‘사회적 뉴딜’ 등이 거론된다.⁵⁾

시민단체, 종교, 노동계, 사회적경제 등 범시민사회가 참여해 4월말 출범한 「코로나19 사회적경제 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서도 공기업, 시민단체, 사회적경제 등이 참여하는 ‘일자리분과’를 구성해 앞으로 활동해 나갈 계획이다. 위기 상황에 일자리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하는 작업에 사회적경제 영역은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고 사회적금융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가. 고용창출력이 검증된 사회적경제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직후 설립된 많은 기업들은 비영리조직, 시민단체가 참여해 2003년부터 진행한 사회적일자리 사업의 결과로 생겨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의 지원과 시민사회의 사회적자본이 결합해 생겨난 것이 지금의 사회적기업들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은 이제 평균매출 20억 규모로 성장해 많은 기업들이 소기업 단계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이제는 이들 사회적기업이 모태가 되어 새로운 일자리 사업을 해 볼 수 있는 단계가 되었다.

사회적기업 근로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27%, 제조업 24%,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에 20%가 종사하고 있어, 이들 돌봄·제조·시설관리 3개 업종에 전체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70%가 일하고 있는 것이다. 이 업종들은 코로나19의 여파가 상대적으로 덜하기도, 하고 일시적으로 수요가 감소했다더라도 회복의 과정에 사회적책임조달 등을 통해 공공부문에 협조를 요청해 볼 가능성이 있는 영역이다.

이 분야 기업 가운데 경영역량이 안정적이고 고용확대 목적의 성장계획을 제시할 수 있는 경우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일자리 사업과 함께 지원·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성장계획은 자체적으로 사업부문을 신설하거나 지점을 설치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 이해관계자와 사업모델이 이질적이라면 자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으며, 몇 개 기업의 역량을

4)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 2020. 4. 22

5) 이정훈, “실업·폐업 급한 불 끈 뒤 … ‘한국판 뉴딜’ 3대 사업 띄운다”, <한겨레신문>, 2020. 4. 22

혼합해 컨소시엄 방식으로 합작회사를 만드는 시도도 가능할 것이다.

뉴딜사업은 일자리지원과 함께 기업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투자가 병행되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사회적경제조직을 법인격으로 구분했을 때 '18년 기준으로 상법상회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63.1%이다. 약 36.9%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협동조합 등 다양한 법인격에 기반하고 있다. 일반적인 투자펀드로 설계하는 경우 주식회사가 아닌 조직들은 사실상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목적의 일자리 펀드를 만든다면 운용 방식을 달리 고민해야 한다.

나. 안전, 환경, 로컬 등 전환적 뉴딜을 위한 섹터 간 협력

한국판 뉴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안전관리체계의 대대적인 전환, 자원순환 체계의 혁신, 지역기반 돌봄망 확충 등 사회적 난제로 던져져 있는 문제들에 대응하는 전환적 뉴딜을 이끌어 내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

다양한 시범사업이 진행되면서 지원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사업을 지속시킬 방안을 찾게 될텐데,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현하기 좋은 사회적경제 조직을 유력하게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관련 분야에서 오래 활동해 온 조직들과 함께 사회적경제 지원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우리 사회에 사회적경제가 확산되는 또 다른 계기가 될 것이다.

새롭게 형성될 영역은 (1) 이해관계자를 포괄하는 민주적 거버넌스, (2) 고용·거래와 관련한 공정한 사업정책, (3) 기술을 활용한 고도화, (4) 지역단위 가치사슬 협력 등을 공통된 핵심 요소로 추구하면서 만들어 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를 위해서는 개별 기업 단위 창업지원 방식에서 벗어난 접근도 필요할 것이다.

일례로 플랫폼사업의 경우 '플랫폼 협동조합'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협동주의 플랫폼 생태계'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로, 불안정 노동자들이 공제조합 등 다양한 경제적 결사체를 결성해 지역사회를 근간으로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하고, 이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려는 벤처기업을 함께 육성하는 방법이 있다.

신생 IT기업들은 대부분 플랫폼 모델을 머릿속에 그리고 출발하지만, 실제 오프라인에 침투해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기에 규제혁신을 과도하게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규제를 혁신하면서 시장에 진입하는 방식은 결과적으로 전통적인 사업체들의 직접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되기도 한다. 플랫폼 스타트업이 위에 나열한 몇 가지 핵심 정책을 채택하기로 하는 경우 임팩트투자 기관이 이들 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사업을 육성하고, 사업이 일정 궤도에 오르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플랫폼노동자 조직이나 지역사회 등에 지분을 양도하고 철수하는 공동체 인수(Community Buyout)를 시행할 수 있다.

다. 노동자 소유기업 인수전환 지원

2~3년 사이 대구 등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택시회사의 노동자협동조합 전환 흐름이 눈에 띄게 활발해지고 있다. 사회적경제가 고풍의 소유주가 물러나는 과정에서 기존사업체를 보존하면서 부드럽게 철수할 수 있는 대안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부도난 중소기업을 직원들이 인수해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고 사업을 계속해 나가는 사례도 있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과정에서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기업이 등장하는 경우, 그 업을 잘 이해하는 직원들을 중심으로 사업을 지속시킬 수 있는 단위를 선택해 노동자 소유기업으로 전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이다. 직원들이 퇴직금 등으로 일정 수준의 자본금을 마련할 수는 있지만 사업체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동자 소유기업에 대한 인수자금을 인내자본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금 마련이 필수적이다.

III. 사회적금융 대응현황과 쟁점

<표 1>은 사회적금융 공급주체와 방식을 대출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위에서부터 차례로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해당자금을 접하고 친숙하게 사용하게 된 순서를 나타낸다고 봐도 무방하다. (1) 민간기금, 지자체 사회적경제기금, 서민금융자금은 사회적경제 전용예산을 마련해 두고, 이 자금을 비영리 민간조직을 통해 현장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돌아오고 있다. (2) 사회적경제 보증부 대출부터 협동조합 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크라우드펀딩은 이차보전, 목표제 시행, 전용상품 출시, 수수료지원 등의 방법을 사용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금융기관에 대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전자는 사회적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자금을 마련하는 ‘전용기금’ 방식이고, 후자는 기존 공급체계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진입을 지원하는 ‘진입지원’ 방식이다.

표 1. 사회적금융 공급주체와 방식 (대출 중심)

유형	구분	공급 방식	공급 주체
전용 기금	민간기금	민간 중개기관 통해 공급	기업CSR조직, 공익재단, 자조기금 등
	지자체 사회적경제기금	민간 중개기관 통해 공급	서울시, 경기도, 화성시 등
	서민금융 자금	민간 중개기관 통해 공급	서민금융진흥원
진입 지원	사회적경제 보증부대출	시중은행 통해 공급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협동조합 금융	협동조합은행 통해 공급	신협, 새마을금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공공기관 통해 공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금융기관 통해 공급	기업은행, 산업은행, 시중은행 (보증부)
크라우드펀딩	P2P 금융기관 통해 공급	비플러스 등	

전용기금 방식의 자금들은 코로나19 이후 자금의 집행 시기를 앞당기고, 조건을 완화하며,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 기금이 긴요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규모가 충분하지 못하고 대응 범위도 각기 제한적이어서 아직 이런 자금들이 보편적 대안이라고 제시할 수는 없다.

현재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중심으로 정부의 코로나19 긴급대출이 시행되고 있어 이 채널을 중심으로 위기를 헤쳐가고 있다. 그나마 '18년부터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 확대로 많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보증서를 이미 발급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증부대출 방식에 익숙해진 상당수 기업들이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증한도를 다 채웠거나 신규발급 요건이 되지 않는 기업들은 사회적경제 전용기금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

코로나 초기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을 통해 정책자금이 지원된다는 계획이 발표되고 병목현상으로 불안감이 가중되면서 정책금융기관과 간담회 자리가 마련되었다. 서민금융진흥원 자금,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사회가치연대기금 등 도매기금을 취급해 본 민간 중개기관들과 협력해 병목현상을 해소해 보자고 제안하였으나 쉽지 않아 보였다. 이후 정책자금 병목현상은 기업은행과 시중은행들이 지역신보의 보증업무를 위탁받아 대출업무를 분담하면서 차츰 완화되어 가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 방식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이번 일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조달 채널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위기 상황에 어떤 채널이 유효하게 가동될지 알 수 없으므로 가급적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해 보면서 여러 문턱을 넘어가 본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둘째,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또한 다양한 금융기관과 협력하는 경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연계 상품을 개발하거나 협력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서로를 알아가는 경험이 축적되어 있었다면 위급한 상황에 병목현상을 해소하는 방안이 좀 더 빠르게 나왔을 것이다. 그나마 정부의 사회적금융 활성화 정책으로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들이 사회적경제 조직을 인지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어서 위급한 상황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비영리 시민단체들은 금융기관 어디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 더욱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 전용기금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보편적 수요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경기도, 화성시 등 사회적경제기금이 조성된 지역은 해당 기금으로 사각지대를 파악해 어느 정도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사회적금융 기관들은 기업들의 정책자금을 활용 현황을 모니터링해 정책당국에 시기적절하게 피드백함과 동시에 전용자금으로 사각지대에 대응하기 위한 작업을 해나가야 한다. 또한 앞서 언급한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 위협에 대처하고 사회적경제 관련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사업을 실현시킬 수 있는 자금마련과 상품개발을 시작해야 한다.

표 2. 코로나19 대응 사회적금융 프로그램 예시

(단위: 억원)

항목	소요액	내용(안)
사회적경제 특별 고용유지 지원금	500	취약계층 고용 높은 조직 유지지원, 대출 후 출자 등 전환
노동공제회 소액대출자금 공급	300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NGO활동가 공제조합 결성 지원
포용적일자리 펀드	500	고용창출력이 검증된 사회적경제 중견기업 중심 규모화 지원
전환적 뉴딜 임팩트 펀드	500	안전, 환경, 로컬 등 전환적 뉴딜 프로젝트 투자
노동자소유기업 인수전환 펀드	500	한계기업에 대한 노동자소유기업으로의 인수전환 지원

코로나19의 재난에 대응하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에 기대되는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전용 기금의 조성이 시급하다. 지금과 같은 경제상황에서는 민간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지금은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이 자금을 풀어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금융의 제도적 기반 마련까지 포함하는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이 긴급성을 갖고 추진되어야 한다. 이번 위기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지자체와 민간 주체들의 협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자체 기금의 민간위탁을 금지하는 지방기금법 또한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자금이 마련되기까지 손놓고 기다리기 보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정부 자금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도매기금 운용기관에 위탁해 필요한 일이 필요한 시기에 일어날 수 있도록 강구해야 한다.

붙임1. 사회적경제조직 규모

- '18년말 기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 고용규모는 약 10만명이고, 연간 노무비는 약 2조원으로 추산됨 (월 1,600억원 규모)
- 사회적기업 판매관리비에서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67.2% (고정비의 약 2/3가 노무비)
- 당기순이익 평균은 사회적기업 3,760만원, 협동조합 1,460만원 (당기순이익률 1.9%, 4.0%)

표 3. 2018년 사회적경제조직 규모

(단위: 개, 명, 백만원)

구분	기업수	취업자수	매출액	노무비	비고
인증사회적기업	2,122	42,742	4,117,495	1,075,132	2018년 성과보고서
예비사회적기업*	1,400	5,600	560,000	140,000	
협동조합	14,526	42,712	2,591,900	642,500	제4차 실태조사
마을기업	1,514	4,500	164,500	41,100	행정안전부 자료
자활기업*	1,211	10,849	356,800	89,200	보건복지부 자료
소셜벤처*	300	1,200	120,000	30,000	
SE-협동조합 중복	-236	-2,408	-232,000	-61,000	협동조합+사회적기업
기타부문 중복	-300	-1,700	-78,000	-19,000	협동조합 법인 중복
합 계	20,537	103,495	7,600,695	1,937,932	

* (예비사회적기업) '19년말 기업수 1,459개 → '18년 1,400개로 추정

표 4. 2018년 사회적경제조직 기업당 평균

(단위: 개, 명, 백만원)

구분	유효기업*	취업자수*	매출액	노무비*	당기순이익	비고
인증사회적기업	2,062	20.7	2,007	524	37.6	월평균 임금 182.7만원
예비사회적기업	1,400	4.0	400	100		
협동조합	7,050	6.1	368	91	14.6	월평균 임금 158.2만원
마을기업	1,514	3.0	109	41		
자활기업	1,211	9.0	295	89		
소셜벤처	300	4.0	400	30		
합 계	13,537					

* (유효기업) 인증사회적기업은 성과보고서 제출기업수, 협동조합은 실태조사 결과 운영기업수 반영

* (취업자수) 인증사회적기업 - 성과보고서의 유급근로자수

예비사회적기업 - '15년 서울시 예비SE 평균고용 7.0명 → 고용 4.0명 적용

협동조합 - 실태조사 결과 취업자수 (임금근로자, 무급상근임원, 유급자원봉사자 포함)

마을기업 - '15년 서울시 마을기업 평균고용 2.3명 → 평균고용 3.0명 적용

소셜벤처 - 예비사회적기업과 동일한 기준 적용

* (매출액) 예비사회적기업 - '15년 서울시 예비SE 평균매출 4.3억 → 매출 4.0억 적용

자활기업 - '17년 평균매출 2.95억 → '18년 평균매출 동일한 수치로 가정

소셜벤처 - 예비사회적기업과 동일한 기준 적용

* (노무비) 협동조합 - 월평균임금과 취업자수 기반 추정

예비SE,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 매출액의 25% 적용 (사회적기업 26%, 협동조합 25%)

붙임2. 사회적경제조직 업종 현황

- 사회적기업은 제조(28.8%) - 도소매(11.3%) - 교육(10.4%) - 문화예술(9.9%) - 시설관리·사업지원(9.3%) - 보건·사회복지(8.7%) 업종 순으로 분포
- 협동조합은 도소매(22.1%) - 교육(15.0%) - 농림어업(9.4%) - 문화예술(9.0%) - 제조(8.9%) - 협회·개인서비스(6.5%) 업종 순으로 분포
- 일반 창업기업과 비교하면 사회적경제 조직이 교육, 문화예술, 돌봄 분야에 상대적으로 높게 분포하고, 사회적기업은 제조업과 시설관리, 협동조합은 농림어업 비중이 높음

표 5. 사회적경제조직 업종 분포 (기업수)

	산업분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창업기업법인	창업기업개인
	(기업수)	2,062	14,526	209,906	1,537,885
A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2.7%	9.4%	1.1%	0.0%
B	광업	-	-	0.1%	0.0%
C	제조업(10~34)	28.8%	8.9%	23.3%	7.0%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35)	0.2%	1.1%	0.2%	0.0%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36~39)	2.5%	1.2%	0.6%	0.1%
F	건설업(41~42)	5.2%	2.5%	11.1%	2.0%
G	도매 및 소매업(45~47)	11.3%	22.1%	28.1%	26.9%
H	운수 및 창고업(49~52)	0.5%	2.4%	3.0%	5.0%
I	숙박 및 음식점업(55~56)	3.4%	3.6%	2.6%	31.6%
J	정보통신업(58~63)	3.6%	3.9%	5.9%	0.5%
K	금융 및 보험업(64~66)	0.0%	-	1.5%	0.2%
L	부동산업(68)	0.3%	1.3%	5.2%	3.9%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1.7%	3.6%	7.8%	1.9%
N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4~76)	9.3%	3.4%	5.4%	1.4%
P	교육 서비스업(85)	10.4%	15.0%	1.9%	5.4%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8.7%	5.4%	0.2%	1.7%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9.9%	9.0%	1.0%	4.7%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1.5%	6.5%	1.3%	7.6%
	기타		0.7%		
	(서비스업 비중)	60.6%	76.9%	63.6%	90.8%

- * 「2018 사회적기업 성과보고서」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노동연구원, '19. 11)
- 인증사회적기업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2018년 사업보고서 분석
- * 「제4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기획재정부, 한국노동연구원, '20. 3)
- '18년 말 기준 신고·인가된 협동조합·연합회 대상 행정조사 및 표본조사
- * 「2019 창업기업 실태조사」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20. 4)
- 창업 7년 이내 기업('11.1.1. ~ '17.12.31. 창업 기업) 대상, 8천개 표본 조사



Memo

A large, empty rectangular area with rounded corners, enclosed by a thin gray border. This area is intended for writing a memo or taking notes.